

업 무 협 약 서

사단법인 글로벌경영지원협력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벤처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각 협회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여성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,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 내용) 양 협회는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- ① 여성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- ② 양 협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비즈니스 교류 및 네트워킹
- ③ 양 협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컨퍼런스, 포럼, 세미나 등 공동 개최
- ④ 여성벤처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
- ⑤ 기타 양 협회의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 등

제3조(운영 방법) 본 협약 내용은 상호협의를 기반으로 하되, 협력 내용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실무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신의성실의 원칙) 양 협회는 본 협약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한다.

제5조(효력)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, 양 협회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(협약의 변경) 협약기간 중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각 협회 간 상호 합의하에 변경 할 수 있다.

제7조(비밀유지) 양 협회는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 협의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는 협약기간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.

제8조(기타사항)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양 협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.

각 협회는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협회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8월 12일



(사)글로벌경영지원협력협회

회장 장 정 미



한국여성벤처협회
Korea Venture Business Women's Association

(사)한국여성벤처협회

회장 성 미 숙